
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직업훈련기관용)

- 5판 -

2022. 2. 7.

본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정에 따라
지속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직업능력정책국
인적자원개발과



목 차



1. 직업훈련기관 방역 수칙	1
2. 공통 방역 수칙	3
3. 개인 방역 수칙	5

<붙임>

붙임 1.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(예시)	6
붙임 2.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(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)	7
붙임 3. 식당카페 방역 수칙	8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 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 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	** 단, 개인 휴대전화기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	
	③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④ 환기 및 소독	
	◦ (환기)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1일 1회 이상 소독 - 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, 물건 중심으로 소독 ◦ (환기 시간 게시 등) 환기시간 게시 및 환가 소독 대장 작성(각 권고)	-
	⑤ 밀집도 완화	
	◦ (밀집도 완화)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2m²당 1명 준수 -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예외	◦ (밀집도 완화)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2m²당 1명 준수 -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예외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	⑦ 추가적용 수칙	
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및 안내 ◦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 -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'식당·카페'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	◦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◦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, '식당·카페' 방역수칙 준수하며 이용
	◦ (관악기, 노래, 연기교습) - (연주노래연기 시) 칸막이 안에서 실시,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- (착석 시)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및 안내	◦ (관악기, 노래, 연기교습) - (연주노래연기 시) 칸막이 안에서 실시,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- (착석 시) 한 방향으로 착석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- (환기)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◦ (댄스·무용 교습) - (춤출 때)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및 안내 - (환기)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	◦ (댄스·무용 교습) - (춤출 때)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
	⑧ 기숙시설 운영	
	▲ 기숙시설 운영금지,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<학원은 아래수칙 적용> ① 입소자 (공통) 원칙적 외출금지,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학원식당 외 숙박 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자가진단앱 체크 -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: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: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: 시설 출입 금지 원칙(단,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, 입소자와 동선 분리) <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> ① 입소자 (공통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10일간 예방격리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·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·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: 시설 출입 금지 원칙(단,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, 입소자와 동선 분리)	
권고사항	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

< 시설 공통 방역수칙 > *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,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 ■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*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■ 음식물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, 손씻기
	⑦ 밀집도 완화(시설별 기준 적용) ■ 면적/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	■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(최소1m)이상 준수(권고)
	⑧ 환기하기(시설별 차등)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(시설별 차등)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□ 개인방역 5대수칙

-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, 2m(최소 1m) 거리 두기
- 아프면 검사받고,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
-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
-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
-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□ 상황별 주요 수칙

(1) 일할 때

-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,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
- 재택근무, 유연근무,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·출장은 가급적 **영상회의**
-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 섭취 자제
-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

(2) 식사할 때

- 식사는 짧게, 대화 자제,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
-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, 한 칸 띄어 앉기
- 혼잡한 식당 피하고, **포장·배달**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(3) 운동할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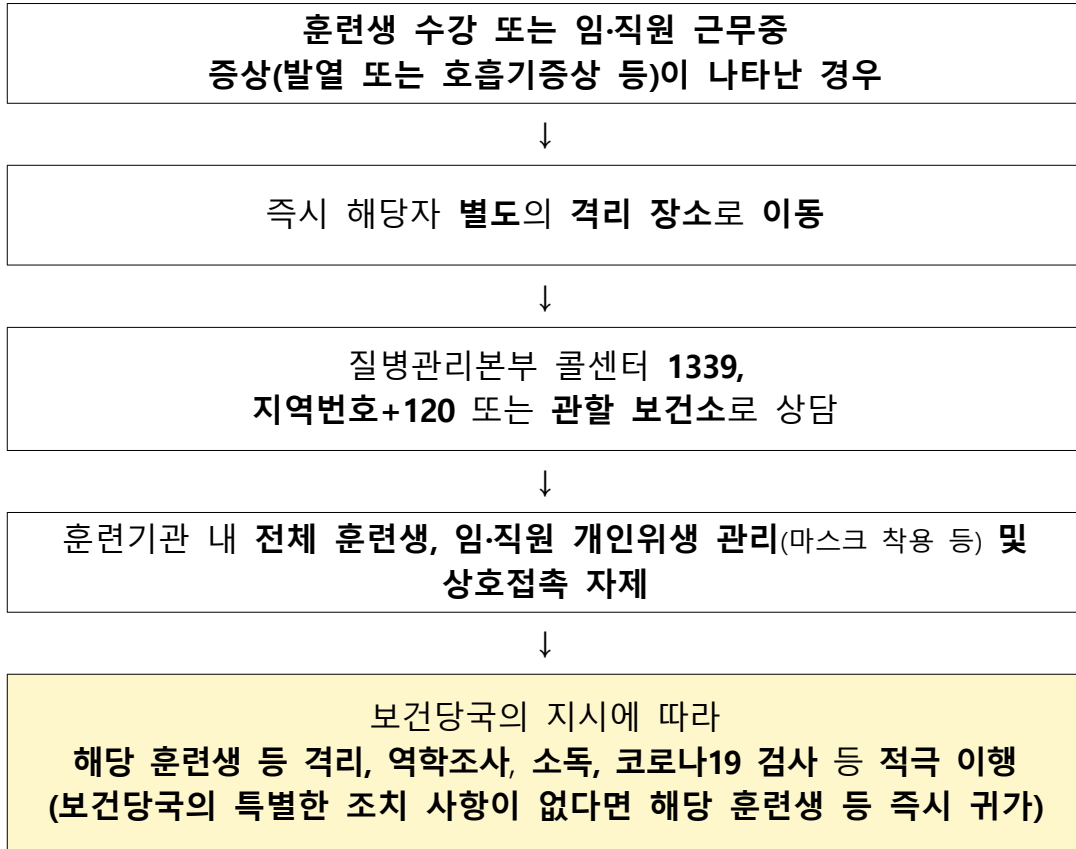
-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,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, 2m(최소1m) 거리 두기
- 개인 물품 사용 (개인 컵, 매트 등),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
- 운동 전·후 모임, 음식 섭취하지 않기
-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,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

(4) 공동 생활할 때

-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, 침대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
-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
-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
-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, 아프면 검사받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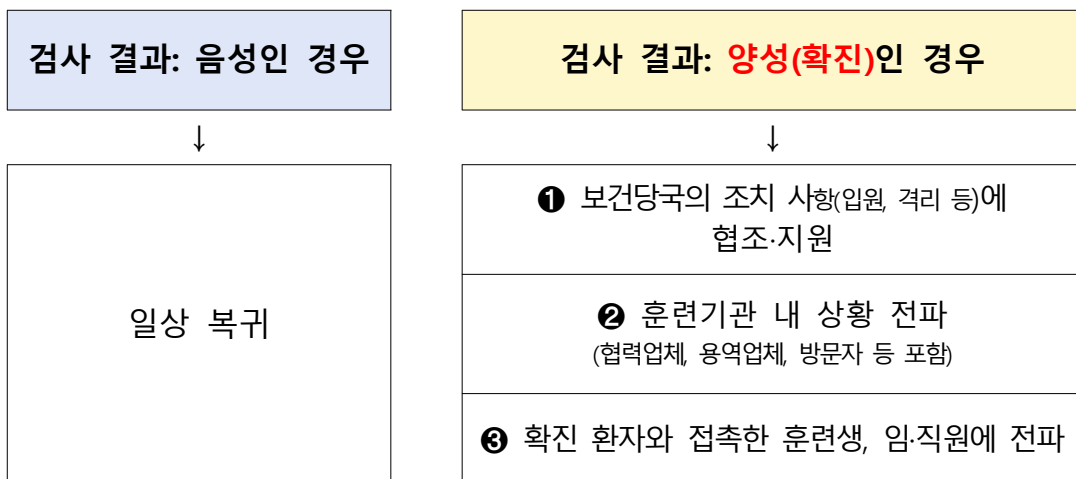
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(예시)

*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있는 자



[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〈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〉

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

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
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밀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

예외 대상	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예외 상황	·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·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·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<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방역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적 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 등: 문자통지서, 종이 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※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 ※ 위 1), 2)와 같은 '접종완료자'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)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	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※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단,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) 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	
	④ 마스크 착용	
	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
	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추가적용 수칙	
	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◦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
권고사항	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집게 사용 등)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, 카드, 게임기계,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,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◦ 권고사항 준수